

현 장 설 명 서 및 특 기 시 방 서

[구관 및 어린이병원 1층~2층 팬코일(FCU) 종합세척 작업]

- 기계설비 -

강원대학교병원

I . 일반사항

1) 작 업 명 : 구관 및 어린이병원 1층~2층 팬코일(FCU) 종합세척 작업(기계)

2) 작업위치 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156 강원대학교병원
(구관 3층~7층, 어린이병원 1층~2층)

3) 작업개요

가) 작업규모

- 층 수 : 구관(3층~7층), 어린이병원(1층~2층)
- 구조체 : 철근콘크리트조
- 작업범위 : 구관(3층~7층), 어린이병원(1층~2층)

나) 작업내용

1. 기계설비 작업

- ① 구관 및 어린이병원 팬코일(FCU) 종합세척 작업 전 본관, 어린이병원 기계실 세척 구역 보양
- ② 팬코일 분해작업→분해부품(커버,필터,필터그릴,송풍팬,드레인판,)을 운반카로 본관, 어린이병원 기계실 이동 → 본관, 어린이병원 기계실에서 고압 세척기로 부품 세척 및 건조
- ③ 분해부품 재설치

4) 작업기간 : 착수 후 28일

5) 작업면허 : 에어컨 세척업

6) 비 고 : 없음

II. 특기사항

- 1) 본 작업은 구관 및 어린이병원 1층~2층 팬코일 종합세척 작업(기계)로서 재사용 집기류 및 기자재를 파악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하고,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재하여 추후 반출 처리한다.
- 2)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하며 현장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, 작업 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자는 작업 시 작업 종사자의 보안에 대한 사항, 안전관리, 소방관리,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문제점 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진다.
- 4) 공종별 작업착수(예정공정표 제출 및 승인) 및 다음 공정에 임할 시 감독관의 승인 후 진행한다.
- 5) 본 작업 발주당시의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정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안전작업은 물론 적합한 품질 및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한다.
- 6) 본 작업에 있어 계약자는 현장에 보양작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건물 및 인명사건 발생시 계약자가 민.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7) 본 작업 중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할 경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8) 본 작업중 관련작업과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오류,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작업하며 객관적으로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.
- 9) 모든 자재는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.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 - 가) 냉난방기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한다.
 - 나) 핀코일크리너, 세척제, 살균탈취제는 안전성이 검증되고 독성이 없으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.
- 10) 본 작업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년도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.
- 11) 본 작업시 계약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기타 사항으로 민원발생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한다.
- 12)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작업(전기)의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13) 각 작업 진행 시 주의 사항
 - 가) 현장 여건 및 공정 진행 상황에 의하여 야간작업 시행 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에 주의한다.
 - 나) 당 현장의 특수성(종합병원)을 작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각 공정을 진행한다.
 - 다) 각 공정에 사용한 자재 및 공구는 작업 종료 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분실 및 도난에 주의하고 모든 책임은 계약자 진다.
 - 라) 작업중 현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며 보양(기존 시설물 보양 설치)을 철저히 해야하며,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

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훼손된 기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.

14) 완료검사

- 가) 완료검사일은 완료계를 제출한 3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날로 한다.
- 나) 완료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, 완료일은 발주처가 이를 전제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날을 완료일로 한다.
- 다)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15) 제출서류

- 가) 종합세척 작업 전·중·후 사진 2부.
- 나) 자재반입 검수사진 2부.
- 다) 완료계 2부.
- 라) 자재구매 거래내역서 2부.

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

< 작업 내용 문의 ☎ 033) 258-2359 >